

대전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124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선, 정민회

변론 종결2024. 7. 23.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2.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D, E, F, G 및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이 사망한 2022. 12. 15. 당시 망인의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자유저축계좌'라 한다)에 281,719,258원의 예금이 있었고, H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자립예탁계좌'라 한다)에는 5,334,350원의 예금이 있었다.

다. 자유저축계좌에서 2022. 12. 19. 합계 260,707,578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자립예탁계좌에서 5,234,35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 생전인 2020년경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하였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면에 "증여 및 유증합의서"란 제목하에 '망인 보유 재산 중 수증인(직계자식)들에게 일정금액을 증여하고, 후일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에 있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장(2면)에는 상속인들이 증여받을 금액(원고는 1억 2천만원, I은 3억 5천만원, E은 1억원, F는 2억 5천만원, G은 1억원, 피고는 2억 5천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장(3면)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2)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부제소 합의 내용이 기재된 "증여 및 유증합의서"의 1면은 보지 못하고 금액이 적힌 2면만 확인한 후 3면에 자필로 계좌와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증여 및 유증합의서의 제3면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1면을 보지 못한 채 이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여 및 유증합의서만으로 원고가 부제소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을 약 2억 8,700만원이인데, 장례비 등으로 33,525,900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은 2억 5,000만원으로 볼 경우 원고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1,666,666원(2억 5,000만원 X 1/6)을 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600,000원(만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제외한 5명의 형제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피고가 보관하다 망인의 유지대로 적당한 토지를 매수하여 부친인 망 J과 망인을 합장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부당이득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망인의 계좌에 남아있던 287,053,608원 중 장례비와 묘지 조성비 등으로 피고가 지출한 33,525,900원을 공제한 253,527,708원이 상속재산이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증여 및 유증합의서)의 1면에 '상속재산은 부모님 제사 및 묘지관리 등 종중재산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G,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자신이 사망하면 부친과 합장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원고를 제외한 5명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추후에 망인을 부친과

합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보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 및 유증합의서의 1면을 읽어보고 3면에 자신의 이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합의를 가지고 원고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5명의 형제자매가 합의한 대로 나머지 상속재산을 망인과 부친의 합장을 위하여 피고가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상속재산 41,600,000원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사용 용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2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1/6에 해당하는 41,600,000원은 원고가 상속받을 재산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현